

7.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 15,881호 1998. 9. 1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희망하는 자가 증가함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실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으로, “20세 이상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20세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다음 1회”를 “다음 회의 시험”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9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2항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별표의 2차시험란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